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박충렬(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정민정(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09. 10. 20

요 약

대형마트는 199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설된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3년 이후부터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대기업들은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02년 235개에 불과하던 SSM의 수가 2009년 7월에는 594개로 급증하였다.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기업체가 쇠퇴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에 대하여 개설 허가제 등의 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일련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중소기업체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소기업체 등이 주장하는 대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입점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내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량제한적인 조치로 거래 교역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WTO GATS 제16조(시장접근)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설허가제 등의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양적인 규제는 같은 조의 적용범위 내에 포함되고, 우리나라는 유통서비스 분야 양허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규제내용이나 재량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소매점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상생협력 등을 위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이다. 또한 국제통상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실효성이 높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도입은 위의 노력들이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WTO GATS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제목적(예를 들어 중소기업체의 보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규제목적을 대규모소매점 주변의 환경 보호, 인근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개설 허가제 등과 같은 조치는 더 이상 WTO GATS 제16조(시장접근)가 적용되는 양적인 규제가 아니라 WTO GATS 제6조(국내규제)가 적용되는 질적인 규제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WTO GATS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국내규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경쟁 외국 기업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점의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GATS 위반 가능성과 이에 따른 WTO에의 제소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규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요약

I. 문제의 제기 / 1	
II. 대규모소매점이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 6	
III. 대규모소매점 규제방안 및 정부의 입장 / 12	
1. 현행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12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정부의 입장	14
가.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제 도입	15
나.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16
다. 영업품목의 제한	17
라. 의무휴업일수 준수 및 영업시간 제한	18
마.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 의무화	19
IV.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와 GATS / 20	
1. GATS 제16조(시장접근)와 제6조(국내규제)의 해석	21
2.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에의 적용	24
V.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대안 / 29	
1.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30
2.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33
3.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도입: 최후의 보충적 수단	36

부록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입점 전후 매출액 및 고객수 변화	8
[표 2]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평가	9
[표 3] 경기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9
[표 4] SSM 입점에 대응한 생존전략	9
[표 5] SSM과의 경쟁 가능성	10
[표 6]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계획	10
[표 7]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10
[표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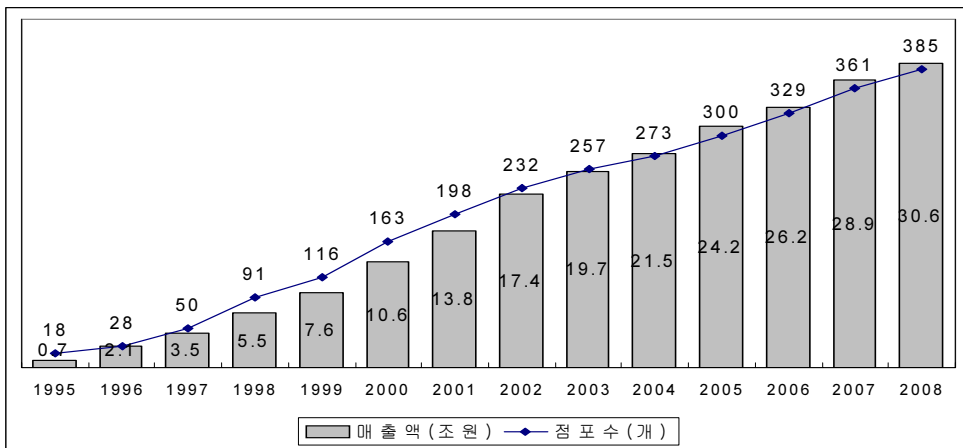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1
[그림 2] SSM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3
[그림 3]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점 개수	6
[그림 4] 대형점으로 인한 매출액 영향 정도	7

I. 문제의 제기

-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의 개점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형마트¹⁾가 선보인 이후, 대형마트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특히,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할인점의 진출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1999년에 점포수 기준으로 백화점을 추월하였으며, 이후 3년 만에 다시 백화점의 2배를 초과하였음
- 2009년 6월말 현재 대형마트의 점포수는 395개에 달하며, 중국에도 32개 점포가 개설되어 있음

[그림 1]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주: 점포수에 해외점포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2003년까지는 산업자원부·한국물류유통진흥원·한국체인스토어협회(2005); 2004년 이후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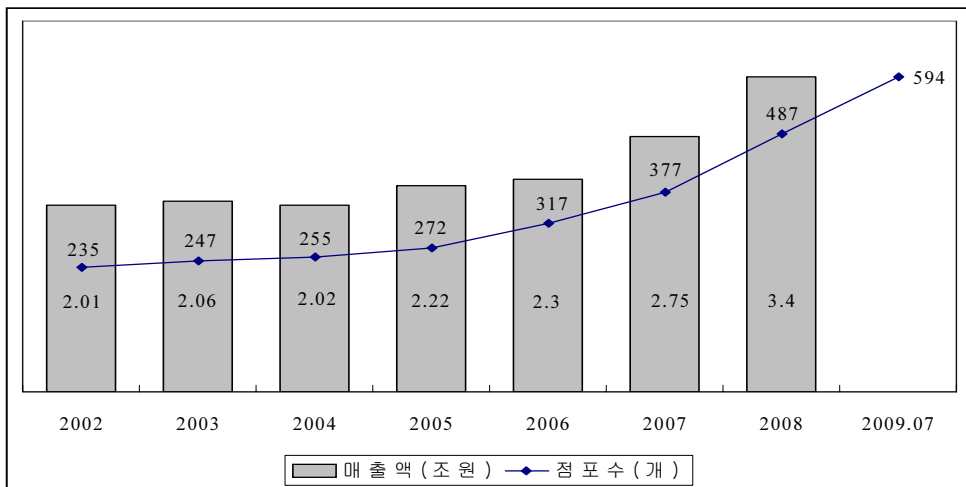
1)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 셀프서비스 등 생산·유통·판매 구조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저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의 점포를 의미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 1은 대규모점포의 한 종류로서 대형마트에 대해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이마트가 119개로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가 112개, 롯데마트가 64개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는 2003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점포수 증가율은 2003년에 10.8%로 하락한 이후 1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의 점포수 증가율은 6.6%, 매출액 증가율은 5.9%에 그침
- 점포수와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은 대형마트가 2003년 이후부터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유통대기업들은 대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게 됨
 - SSM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 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일반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대부분 660m² 이하인데 반해, SSM의 매장면적은 330m²에서 3,000m²으로 다양함
 -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대비하여 SSM을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SSM으로 용어를 통일함
 - 한편,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는 달리, SSM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한 해 동안 SSM의 매출액과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2007년부터 시작된 출점 경쟁은 상위 3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2008년에 매출액 기준 1위 업체인 GS수퍼마켓은 25개, 2위 롯데슈퍼는 31개, 3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무려 57개 신규점을 개설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 더욱 확대되어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2009년 8월 4일)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SSM 점포수는 594개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SSM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각년도; 2008년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2009)

□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유통업체가 쇠퇴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음

- 특히, 2008년 이후 상위 3사의 경쟁적인 출점으로 인해 SSM의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종 변경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가능성도 낮은 영세유통업체들이 폐업 상황에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규점이 개설되었거나 개설 예정인 지역의 중소유통업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입점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또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24개는 2009년 7월 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를 결성하고 대기업 점포 확산 저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대형마트, 특히 SSM의 출점과 관련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SSM이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규모소매점²⁾에 대한 규제 방안과 이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고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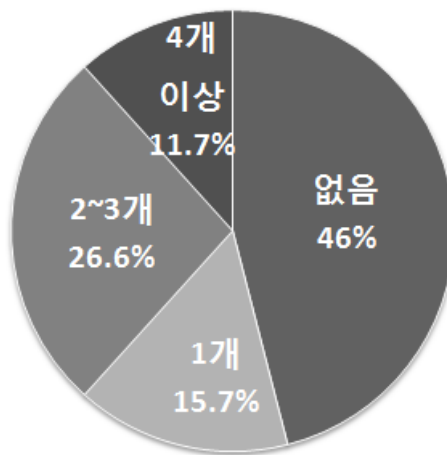
2) 본 보고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규모소매점을 사용함

- 제IV장에서는 개설 허가제 등의 규제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봄

II. 대규모소매점이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공표하고 있는 「전국 중소기업 총람」³⁾을 통해 대형마트⁴⁾가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볼 수 있음
- 「2008년 전국 중소기업 총람」에 따르면, 전체⁵⁾의 5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가 1개 이상의 대형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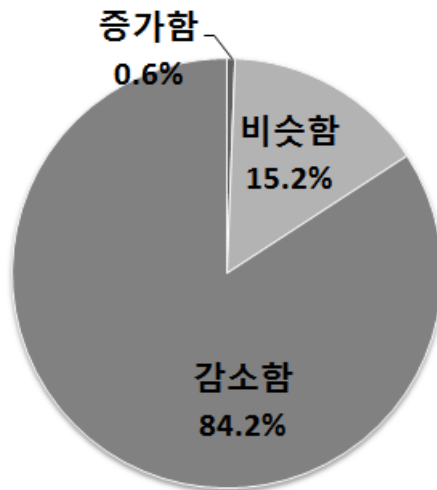
[그림 3]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점 개수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류코드 47(소매업: 자동차 제외)에 종사하는 소매업체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로, 2002년 이후부터 3년마다 공표되고 있음. 단, 통계조사가 어려운 무점포소매업(479)과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료소매업(477), 대형종합소매업(471) 등에 종사하는 업체는 제외됨
- 4) 「전국 중소기업 총람」에서는 대형마트 대신 '대형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점은 산업분류코드 471(대형종합소매업)에 속하는 업체로서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업체를 일컫음. 따라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이 여기에 포함됨
- 5) 조사 모집단은 590,524개 업체로 구성됨

- 대형점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319,0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2%가 대형점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비율은 평균 42.2%로 나타남([그림 4] 참고)
 - 18.3%는 매출액이 51% 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그림 4] 대형점으로 인한 매출액 영향 정도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2006년에 실시한 5개 지역의 재래시장⁶⁾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작성한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6) 여수 서시장주변시장, 울산 화봉시장, 경산 공설시장, 마산 산호시장, 서귀포 매일 시장

- 대형마트 출점 전·후로 재래시장 점포의 일평균 매출액은 17만 1,300원에서 14만 5,700원으로 14.95% 감소하였고, 고객수는 22.5명에서 20.3명으로 9.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래시장 상인들의 54%가 매출 감소의 외부적 원인으로 ‘대형마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31.3%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들고 있음
- 한편,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유통대기업의 SSM은 재래시장 및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대형마트에 비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 GS수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상위 3사 점포 주변(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SSM이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2009년 5월)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SSM 입점 이후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객수가 줄어들었음([표 1] 참고)

[표 1] 입점 전후 매출액 및 고객수 변화

응답자수	1일 평균 매출액(만원)			1일 평균 고객수(명)		
	이전	이후	증감률(%)	이전	이후	증감률(%)
300	129.3	85.2	-34.1	127.8	80.8	-36.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 응답자의 79.0%는 SSM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63.5%가 SSM(대형마트 포함) 입점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음([표 2], [표 3] 참고)

[표 2] SSM 입점 전후 전반적인 체감경기에 대한 평가

응답자수	매우 호전	다소 호전	비슷	다소 악화	매우 악화
300	-	0.7%	20.3%	38.0%	41.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표 3] 체감경기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응답자수	SSM입점 (대형마트 포함)	경기 침체 따른 소비위축	물가상승	동종업종상 인간 과다경쟁	수익률 저하
237	63.5%	27.4%	5.3%	2.7%	1.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 SSM 입점에 대응한 생존전략으로 ‘대응책 없음’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 SSM 입점에 대응한 생존전략

응답자수	SSM 수준의 가격인하	전단지 배포	마일리지 서비스 실행	취급품목 확대	배달 서비스 실시	점포 환경개선	대응책 없음
300	13.7%	4.7%	12.3%	1.3%	22.7%	8.75	68.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 SSM과의 경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쟁이 애당초 불가능하다’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응책 없음’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5], [표 6] 참고)

[표 5] SSM과의 경쟁 가능성

응답자수	경쟁 가능하다	경쟁 어려우나 해볼 만하다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104	2.9	36.5	60.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표 6]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계획

응답자수	인건비, 원가 등 비용절감	적극적인 판매활동	휴업 또는 폐업	사업전환 (직업전환)	특별한 대응책없음
300	12.0	5.7	15.7	6.0	60.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SSM 규제법안 조속 통과’가 9.4점 (10점 척도, 1점 전혀 불필요 ~ 10점 매우 필요)으로 가장 높았음

[표 7]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자수	SSM 규제법안 조속통과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신용/보증 자금지원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300	9.4	9.2	8.7	6.5	5.6	5.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9

- 대형마트, 특히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SSM이 지역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에 대한 허가제를 비롯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 허가제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었음
 -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문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다음 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함

Ⅲ. 대규모소매점 규제 방안 및 정부의 입장

1. 현행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 현재 입점 제한 등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는 재래시장 회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제한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한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1,0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제한이 가능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에 의한 간접적 입점제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지자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는 대규모소매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입점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자치단체 업무지침을 통한 규제
 - 대구시 남구청이 대규모소매점 제한을 위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한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지침에 의해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장의 업무지침에 의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유통대기업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1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의 연기 또는 사업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임
 - 2009년 7월 이후 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특히 SSM의 입점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업무지침 등을 통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제한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대규모소매점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⁷⁾
 - 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경우에는 몇몇 경우에 입점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룸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규모소매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7) 주변상권 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대한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한 데에 대하여,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대규모점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예가 있음(2001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홈플러스 사건, 2006년 충남 논산시청과 프라임 아울렛 사건, 2006년 경남 창원시청과 롯데마트 사건 등)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정부의 입장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방안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까지 모두 12개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이시중의원(2008.6.19), 강창일의원(2008.6.25), 김희철의원(2008.8.4), 최구식의원(2008.9.24), 이정희의원(2008.11.10), 주성영의원(2008.12.17), 노영민의원(2009.6.16), 이용섭의원(2009.6.19), 안상수의원(2009.6.29), 이종걸의원(2009.8.12), 주승용의원(2009.9.3), 김재균(2009.9.23)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이시중	강창일	김희철	최구식	이정희	주성영	노영민	이용섭	안상수	이종걸	주승용	김재균
준대규모점포 규정		○	○		○	○	○	○			○	
개설 허가제 도입					○		○	○	○		○	
영업품목제한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명령	○	○			○			○				
개설영향평가의무화		○	○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의무화						○						
심의회 설치					○		○					
기금 설치					○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 지정											○	

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고

-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규모소매점의 개설, 영업활동 등을 제한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대규모소매점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대규모점포로 확장
 - 개설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 이들 개정안에는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들 방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각각의 방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대규모소매점과 관련된 논의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아래에서는 각각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봄

가.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제 도입

-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개설예정 인근지역의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입장

- WTO 서비스협정(이하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16조 제2항([부록 2] 참고)은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으면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한 서비스거래 또는 서비스 영업량이나 산출량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설 허가제는 ‘경제적 수요심사’⁸⁾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으로 간주되어 GATS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임
- GATS 제21조([부록 4] 참고)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보상의무와 대외이미지에의 부정적인 영향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이미 폐지된 허가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규제철폐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기존의 정책에 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나.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인 SSM이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로 확대하여 SSM도 대규모점포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8)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는 새로운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지 여부를 정부·업계·업종별 협회 등이 통제하는 제도임

□ 정부의 입장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유통선진국들에 비해 중견유통업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규제대상 점포의 범위를 1,000㎡로 확대하는 것은 중견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다. 영업품목의 제한

- 대규모소매점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기업과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공정하므로 영업품목을 제한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의 입장

-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것도 GATS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시장접근의 제한으로써 양허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영업품목의 제한은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
 -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헌법』 제37조 제2항)’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자의 영업 보호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확대해석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라. 의무휴무일수 준수 및 영업시간 제한

- 대규모소매점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을 통하여 24시간 영업 또는 1년 365일 영업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체가 대규모점포와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휴업 및 영업종료시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의 입장

-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규제이긴 하지만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은 대규모소매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GATS 제17조 1항 내국민대우 규정([부록 5] 참고)의 위배소지가 높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임
 - 즉 동 조항이 비록 국내규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정취지가 명백하게 경쟁조건의 변경을 의도하고 있으므로, 외국계 대형할인점 등 이해 당사자가 내국민대우 위배를 근거로 불만을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 등으로의 구매 유인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편의점 등 소매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 의무화

-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소매점의 수익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여 개설을 규제하려는 것임

□ 정부의 입장

- 영향평가결과가 대규모점포 개설여부에 영향을 준다면, 사실상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서비스공급자 수의 제한으로 간주되어 GATS 제16조제 2항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대규모점포 개설시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편의성과 집값 상승 등을 기 대하여 찬성하는 지역주민들과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측면이 있음

IV.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와 GATS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개설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가 우리나라가 맺은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임
- WTO에서 유통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 양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허안에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규제의 내용이나 혹은 그 규제에 대한 재량이 있음을 기재하였다면 규제가 가능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통서비스 분야 양허시 규제내용이나 재량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음
 - 프랑스 등은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당시의 양허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정부는 GATS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
- 그렇지만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 자체가 GATS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함⁹⁾
 -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¹⁰⁾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사안(이하 US--Gambling 사안)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보고서 및 항소심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가제의 도입이 GATS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침

9) 왕상한(2007) 등

10) 카리브해 동부의 소(小)앤티리스 제도에 있는 나라

- 정부의 주장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허가제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가 GATS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살펴봄

1. GATS 제16조(시장접근)와 제6조(국내규제)의 해석

- 시장접근 제한의 효과를 야기하는 모든 국내규제가 WTO GATS 제16조 제2항의 위반인 것은 아님
- 그러한 규제수단을 정당화하는 정책목적이 있다면 이는 GATS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양적 규제가 아니라 GATS 제6조([부록 3] 참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임¹¹⁾
 - GATS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문맥에 비추어 보건대 제16조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고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적이 없는 양적인 규제임
 - *US--Gambling* 사안을 보건대, WTO 상소기구는 정당한 정책목표가 인정될 경우, 회원국의 규제 수단 선택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¹²⁾ 이러한 WTO 상소기구의 태도는 현 WTO 체제 내에서 서비스 규제 자율성 침해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GATS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인 *US--Gambling*사안의 검토를 통해, 국내 규제가 내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책

11) Leroux(2007).

12)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S -- Gambling)*, WT/D285/AB/R (2005년 4월 7일), 2005년 4월 20일 채택 (이하 “*US -- Gambling*”), paras. 306-311 참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내규제 그 자체가 WTO의 GATS 위반은 아닌 것으로 인정됨¹³⁾을 확인할 수 있음

- 미성년 사행행위의 금지, 조직범죄 및 돈세탁의 예방과 같은 정책목표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음¹⁴⁾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내규제는 그러한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도 GATS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 허가제 등의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양적 제한을 금지하는 GATS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GATS 제6조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GATS 제16조가 회원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양적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면, GATS 제6조는 회원국의 질적 규제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GATS 제6조¹⁵⁾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규제가 도입·시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13) Leroux(2007)

14) *US--Gambling*, para. 296.

15) GATS 제6조는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한 각종 자격, 인·허가, 기술적 기준 등, 일종의 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규율의 범위 내에서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GATS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음
 - GATS 제6조에 따르면, 허가의 요건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성과 투명성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그러나 해당 국내규제조치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러한 조치가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더 이상 질적인 규제라 보기 어려움
 - 이 경우에는 대상 규제를 양적 규제라고 보아 GATS 제16조 및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음
 - 예를 들어 WTO 상소기구는 *US--Gambling* 사안에서 미국이 「불법도박업법」(Illegal Gambling Business Act)와 「전신법」(Wire Act) 및 「여행법」(Travel Act)에 근거하여 엔티가바부다의 인터넷 도박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
 - 위의 세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 도박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표가 있다고 인정됨
 - 그러나 미국은 「주간(州間) 경마법」(Interstate Horsing Act)에 근거하여 국내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경마 내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세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의 인터넷 도박 서비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사행행위금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2. 대규모소매점 규제에 대한 적용

- 개설 허가제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GATS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규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의 객관적인 공정성 확보
 -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목표를 설정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규제수단은 GATS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등 GATS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질적 규정
 - 마지막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비차별
- 우리나라가 유통업과 관련하여 양허표에 별다른 유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GATS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시장접근에 대한 양적인 제한 조치이므로 정당한 정책목표의 존재를 입증하여 해당 조치가 질적 규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GATS 위반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음
 - 따라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허가의 요건 중에 GATS 제16조 제2항에 열거된 양적인 제한¹⁶⁾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GATS 제16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16) GATS 제16조 제2항에 열거된 양적인 제한 여섯 가지 유형 가운데 대규모소매점 규제와 관련하여 그 위반 여부를 논의될 수 있는 양적 제한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임

- ① 수량 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② 수량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③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 한편,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목표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객관성, 투명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허가 거부를 방지할 수 있다면 GATS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GATS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정책목표 대신 보다 직접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다른 정책목표를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GATS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규제조치의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국내규제조치는 환경·복지·도시개발과 같은 정책목표와 연관시켜 실시한 경우에 GATS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 이 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보호 및 대형마트 설립·운영의 규제와 같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목표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 대형마트 주변의 환경 보호,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으로의 정책목표 전환이 필요함
- GATS 제6조(국내규제)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 요건, 소비자 보호 혹은 인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소음이나 환경 요건 등은 일정한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 투명성 요건에 합치되는 허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 규제 정책 변화 및 효과

- 일본은 70년대 이후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소매점의 설립 및 운영을 엄격히 규제하다가 2000년부터는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목적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로 변경하였음
- 일본은 1974년부터 「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大規模小売店舗における小売業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이하 「대점법」)을 통하여 대규모 소매점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였는데 중소기업체의 보호가 규제의 목적이었음
 - 「대점법」은 중소기업체의 사업 활동 기회를 적절하게 확보(경제적 규제)하기 위하여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었음
- 「대점법」은 1980년대 말부터 「미일구조문제협약(日米構造問題協議,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의 의제가 되었고 결국 일본은 규제 완화(운용적정화), 개정, 일부폐지라는 3단계를 거쳐 이를 폐지할 것을 약속함
- 일본은 2000년 5월 「대점법」을 폐지하고 대신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이하 「대점입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소매점 주변지역 생활환경의 유지와 보전(사회적 규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7) Kenji Higuchi, Sekai ni Okureru Ogata Tenpo Kisei, Nikkei Ryutus Shinbun (1998년 7월 28일)

1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9) 참고

- 「대점입지법」의 규제내용은 대규모 소매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주차수요의 충족 등 교통에 관한 사항, 보행자의 통행편의 확보, 폐기물 보관시설의 필요용량 확보에 관한 사항, 소음의 발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 「대점입지법」은 WTO의 GATS 규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¹⁷⁾

-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업의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¹⁸⁾

-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가 GATS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규제의 근거를 법률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경쟁 외국기업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법률을 통해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제도와 사업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으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순서이고,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 도입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GATS 위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GATS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유통서비스 분야 양허 후 현재 3년이 지났으므로 GATS 제21조에 따라 양허표를 수정하여 규제조치의 시행을 가능토록 할 수도 있으나, 양허표의 수정은 협상과정에서 보상조치로 인해 다른 분야의 개방을 앞당기게 할 위험이 있음
 - 양허안 수정시, 수정회원국은 기존 양허표에 규정된 것에 비해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양허표 수정에 대한 보상조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다른 시장(자동차시장, 반도체 시장 등)의 개방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상조치는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됨
 - 따라서 양허표 수정을 통하여 문제의 규제조치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통서비스 분야의 양허표 수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교환해야 할 대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다음 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영세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법률을 마련하기 이전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함

V.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에 대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방안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님
 - 양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적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WTO GATS 위배 문제를 피할 수도 있음
- 하지만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규모소매점의 설립·운영을 규제하는 근거가 도입되는 경우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제 통상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입법규제 이전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규모소매점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현재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정부는 재래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론 경기의 침체, 유통업 분야의 소상공인의 과잉화 등이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단체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형마트, 특히 SSM의 확산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행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소매점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입법 규제의 도입에 대해 검토함

1.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 체인본부를 구심점으로 가맹점(슈퍼마켓)들이 점포운영을 효율화·현대화하여 유통대기업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2008년부터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고·상품관리, 고객관리,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
- 2008년에 체인본부·가맹점 운영 매뉴얼과 공동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90개 슈퍼마켓에 대한 지도 등의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

- 2009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두 26개 체인본부, 800개 가맹점에 38 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임의가맹점형 및 조합형 체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 보유상품 품목수, 가맹점 수, 가맹점 납품비율, 가맹점 당 지도요원 수, 가맹점 지도 수준, 본부 및 가맹점 운영매뉴얼 구비·활용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 체인본부는 개별 슈퍼마켓에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점 기능 외에도 상품 개발, 영업방식 표준화, 경영지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슈퍼마켓 점주들이 조직한 슈퍼마켓협동조합도 포함됨

□ 한편 중소기업청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의가맹점형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태의 점포 조직화사업도 지원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점포리뉴얼 자금 용자,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개발유망 소상공인 성공사업 확산을 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임
 - 직영점포 2개 이상(2호점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기존 사업모델 분석 및 체계화, 표준화 매뉴얼 작성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이를 위해 2009년 10월 중소기업청은 쇼핑환경, 상품, 가격,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성공점포로 정착한 중소소매점 50곳을 “우수마트”로 발굴

- 이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동네슈퍼의 경쟁력 개선에 활용하며, 경영의 지가 있는 슈퍼마켓을 우수마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함
 - 점포 리모델링, 인테리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1억원 한도), 자영업컨설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케이블 TV에 우수 사례 소개, 언론홍보, 정부포상, 해외 교육의 기회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 제공
- 또한 슈퍼마켓 조직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문구점, 안경점 등 조직화가 가능한 업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임
- 소규모점포 조직화사업이 실제로 영세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확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평가결과 조직화사업이 영세유통업체의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면,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체인본부의 가맹점 지도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체인본부의 공동구매 기능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소유통업체는 구매력(Buying Power) 부족 및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대규모소매점과의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고객관리, 환경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가격의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임의가맹점형이 아닌 프랜차이즈형태의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형태의 점포는 기존의 편의점과 같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편의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영세유통업체 지원이라는 정책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

2.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 2009년 7월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가 대형마트, 특히 SSM의 입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이 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8월 4일부터 사업조정신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7월에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에 예정되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점의 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옥련동의 경우는 홈플러스가 자발적으로 입점을 유예하고, 갈산동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개시 일시조정 권고’ 조치를 내림

- 이후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을 막으려는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이 확산되었는데, 유통업의 사업조정과 관련된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전됨에 따라 유통업 분야의 사업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관련 고시,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업종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추가하고, 8월 25일 ‘SSM 사업조정 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함
- 2009년 9월 21일 현재 SSM에 대해 모두 60건의 사업조정신청¹⁹⁾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입점을 보류하였으며 50건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조치가 내려졌음
- 중소기업청은 유통업 분야의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시·도사가 정확한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유통업체,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기대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대한 사전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 확보
- 신설된 「사전조사신청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단체 등은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입점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의 사전인지는 아주 중요함

19) 이마트 등 대형마트(3건), 교보문고(1건), 이마트 주유소(2건)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7건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조정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제고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31건에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담당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신청요건 확인 및 중소기업의 예상 피해 수준 등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과약 및 실행 능력 제고
 -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조정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일천하므로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
 - 협의회를 통한 자율조정에 의해 사업조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업조정 권고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이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동 벌칙이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조정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로 사업조정신청이 활발해진 것을 최근의 일이므로 동 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도입: 최후의 보충적 수단

- 소규모점포 조직화와 사업조정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이 존재함
-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에 의한 간접적 입점제한, 자치단체 업무지침을 통한 규제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인데, 모두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임

-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소규모점포 공동화 사업, 사업조정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현행 지원 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국제통상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실효성이 높은 새로운 제도와 사업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설 허가제 등의 규제의 도입은 위의 노력들이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GATS 위반 가능성과 이에 따른 WTO에의 제소 가능성,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 침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한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정안
준대규모점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창일의원안, 이정희의원안, 이용섭의원안(매장면적 1,000~3,000㎡인 점포 및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 김희철의원안(대규모점포와 동일 상호 사용시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규정) - 주성영의원안(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 노영민의원안(300㎡ 이상 3,000㎡ 미만 매장)
개설 허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희의원안, 노영민의원안, 이용섭의원안 - 안상수의원안(중소 시·군·구의 경우에는 개설 허가제 도입, 1곳을 초과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영업품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종의원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종의원안, 강창일의원안, 이정희의원안, 이용섭의원안
개설영향평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창일의원안 - 김희철의원안(개설영향평가에 따라 개설등록 제한 가능) - 최구식의원안(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에 따라 개설제한 가능)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성영의원안
심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희의원안(각 지자체에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설치) - 노영민의원안(각 지자체에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희의원안(지역상권활성화 기금 설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희의원안(지역유통조합 설립·지원) - 주성영의원안(대규모점포 관련 인·허가 의제 삭제, 국·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배제, 등록취소시 청문절차 삭제) - 안상수의원안(중소 시·군·구(인구 15만명 이하의 시·군과 30만명 이하의 구)를 따로 구분하고, 이들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부록 2] GATS의 시장접근제한 금지 규정

제16조(시장접근)

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 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가. 수량 쿼타(numerical quotas),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부록 3] GATS의 국내규제 관련 규정

전문 제4문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

제6조(국내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4.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율은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 다.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립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4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부록 4] GATS의 양허 수정·철회 관련 규정

제21조(양허표의 수정)

1. 가. 수정회원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나. 수정회원국은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월 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한다.
2. 가.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회원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과 합의에 있어서 관련회원국은 이러한 협상 이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에 비하여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 보상 조정은 최혜국 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 가. 협상을 위해 마련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정회원국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중재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회원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4. 가. 수정회원국은 중재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나. 수정회원국이 자기나라가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그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회원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수 있다.

[부록 5] GATS의 내국민대우 관련 규정

제17조(내국민대우)

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표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7
- _____,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a
- _____,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9b
- _____,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9c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대규모 소매점의 제한에 관한 입법방향”, 2006
- 박연숙·최성호,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산업자원부·한국물류유통진흥원·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 유통산업 발전사」, 2005
- 산업자원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등 17대 국회 대규모 점포 제한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 11건
- 양재섭,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왕상한, 「WTO 유통업개방의 반성과 대안」, 법문사, 2007
- 원종문, “SSM 출점 기능분담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방안”,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대규모 점포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9
- 이상민의원실,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6
- _____, “대형유통점 규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 2009
- 이정희의원실, “지역상권 몰락위기,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9

-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07a
 _____, 「대규모점포 제한 국내외 사례검토 및 과제」, 2007b
 _____, 「중소유통의 대형마트 확산 대응방안」, 2008
 _____,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 중소기업청, 「2008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_____, 「'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2009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선진국의 소매업 발달과 유통정책」,
 2006a
 _____,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
 는 영향」, 2006b
- 지식경제부·대한상공회의소, 「2008년 전국 중소기업 총람」, 2008
- 최승환, 대형유통점 규제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기업형 SSM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9/5/21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 기반구축」, 2005
- 한국은행, 2009,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해
 외경제정보」 제2009-61호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리테일매거진」, 2009년 1월호
- Eric H. Leroux, "Eleven Years of GATS Case Law: What Have We
 Learn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0,
 2007
- Joel P. Trachtman,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9, 2005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모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총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현안보고서 제41호

발 간 일 2009년 10월 20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0637-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현안보고서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